

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3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시 권역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 및 설치 주체 변경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센터 설치 규정에서 권역별 설치 삭제(안 제4조)
- 나. 심리지원센터별 주요 업무 및 기능 추가(안 제4조)
- 다. 조직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권역별 규정 삭제(안 제6조)
- 라. 센터 설치 관련 사업비 지원근거 신설(안 제7조)
- 마. 그 밖의 문구 및 약칭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반영)
 - 개선의견: 심리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·정신적
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조항 신설
 - 반영사항: 반영완료(안 제4조제2항제3호)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2. 13. ~ 3. 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미경(☎2133-7842)

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”을 “공공”으로, “위하여”를 “위한”으로, “규정함”을 “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심리지원센터”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란 심리평가, 개인상담, 심리교육, 집단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서울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차상위 계층”을 “차상위계층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센터의 설치)”를 “(센터의 설치·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

은 조 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, “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”를 “위하여 광역 센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광역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3.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
4.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별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자치구별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별·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·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
2. 심리상담과 교육을 위한 인식개선·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를 삭제하고,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.

제5조(종전의 제6조)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”을 “광역 센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”로, “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6조(종전의 제7조)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심리지원센터”를 각각 “광역 센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설치 되어”를 “설치되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”을 “광역 센터를 민간위탁하는”으로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.

제7조(종전의 제10조)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심리지원센터”를 “자치구별 센터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구에 센터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리지원센터”를 “시장은 광역 센터”로,
“구하기 위하여 각 심리지원센터”를 “위해 광역 센터”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</u>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<u>규정함</u> 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공공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한</u> ----- <u>규정</u> <u>하여 시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</u>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심리지원센터”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란 심리평가, 개인상담, 심리교육, 집단활동 등을 통해 <u>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</u>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심리지원센터”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란 심리평가, 개인상담, 심리교육, 집단활동 등을 통해 <u>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</u>
제3조(적용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<u>서울시</u> 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. ② <u>시장</u> 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<u>차상위 계층</u> ,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은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적용대상) ①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----- -----. ② <u>서울특별시</u> 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 <u>차상위계층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4조(센터의 설치) ① 서울특별시
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
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
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
심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
수 있다.

② 심리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설
치하되, 권역·위치 및 명칭은
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4조(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
시장-----
----- 위
하여 광역 센터-----

-----.

② 광역 센터의 주요 업무 및
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
운영지원 및 모니터링·평가
에 관한 사항

2.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
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
3.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
신체적·정신적 건강권 보호
에 관한 사항

4.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
및 보급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
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
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지역특성과 요구를
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
위하여 자치구별 센터를 설치·
운영할 수 있다.

④ 자치구별 센터의 주요 업무

제5조(업무 및 기능) 센터의 주요
기능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
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
추구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와
같다.

1. 개인별 · 집단별 맞춤형 심리
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
2.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
조모임구성 및 동료상담가 교
육 · 양성에 관한 사항
3.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
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
관한 사항
4.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
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

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별 ·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
개인별 · 집단별 맞춤형 심리
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
2. 심리상담과 교육을 위한 인
식개선 · 홍보 및 유관기관과
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
항
3.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
위하여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삭 제>

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
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센터 조직 등) ① 센터에는
제5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
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
되,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
시장이 정한다.

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
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
운영요원을 두되, 구체적인 배
치인원·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
항은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
라 시장이 정한다.

1.·2. (생략)

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 ① 시장
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
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
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
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각 호
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
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
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

제5조(센터 조직 등) <삭 제>

광역 센터에는 제4조제2항에 따
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

----- 시장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센터운영의 위탁) ① ----
-- 광역 센터-----
----- 광역 센터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 설치되어 -----

3. (생략)

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8조(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) ① 심리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 심리지원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9조(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구 또는 수탁 기관에 센터의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정책이나 사업에 따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의 위임)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심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.

<신설>

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광역 센터를 민간위탁 하는----- 범위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광역 센터-----
----- 위해 광역 센터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7조(사무의 위임) ① -----
----- 자치구별 센터-----
-----.
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

<u>제11조</u> (생 략)	<u>당 자치구에 센터의 설치·운영</u> <u>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</u> <u>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정</u> <u>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</u> <u>을 할 수 있다.</u> <u>제9조</u> (현행 제11조와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자치구 심리지원센터(마음상담소) 설치비 지원 등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3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5)	2차년도 (2026)	3차년도 (2027)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지출	자치단체자본보조	1,300,000	520,000	260,000	-	-	2,080,000
	소계(a)	1,300,000	520,000	260,000	-	-	2,080,000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1,300,000	520,000	260,000	-	-	2,080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5)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국비		-	-	-	-	-	-
시비	지방세수입	1,300,000	520,000	260,000	-	-	2,080,000
	세외수입	-	-	-	-	-	0
	지방채 등	-	-	-	-	-	0
민간		-	-	-	-	-	0
기타		-	-	-	-	-	0
합계		1,300,000	520,000	260,000	-	-	2,080,000

5. 덧붙이는 의견

- 설치목표 : '25년 10개소, '26년 4개소, '27년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, '27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

6. 작성자 :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미경(2133-784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연도		1차년도 (2025)	2차년도 (2026)	3차년도 (2027)
구분				
지출	○ 자치단체자본보조	1,300,000	520,000	260,000
	설치비	1,300,000	520,000	260,000
	소계	1,300,000	520,000	260,000